

독일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
출연 동의안



구 미 시

독일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8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구미시는 세계화, 지방화 시대에 새로운 지역발전모델을 수립하고 유럽 내 경제교류 위한 해외거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독일통상협력사무소를 개설·운영하고 있음
- 나.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,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독일통상협력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9 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(1) 출연금액 : 금210,000천원(시비)

(2) 주관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
(3) 관련법령

- 법 령 : 지방재정법(제18조), 지방자치 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(제20조)

- 조 례 :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

나. 주요 사업

(1) 기업지원업무 추진

- 관내 중소기업 시장개척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
 - 바이어 찾기, 매칭 등 독일 및 EU지역 해외시장 판로개척
 - 신규진입 시장 조사 및 분석 대행
- 해외박람회 참가기업 지원
 - 숙소, 통역, 바이어 상담 등 기업체 전반적인 지원
 - 박람회 참가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속 진행
- 해외 지·상사 업무 수행
 - 지사설립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지 지사역할 대행
 - 수출기업의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미팅 주선
- 중소기업 R&D 부분 지원
 - 관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이전 및 공동연구 가능한 기업체 물색
 - EU 내 관련 기관 및 연구소 방문, R&D 협약 지원

(2) 신성장 산업개발 및 육성사업 지원

- 차세대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
 - 구미시 미래 먹거리 사업(탄소, 자동차, 의료기기)과 관련된 사업의 공동연구, 협력사업 등 추진
 - 구미에 접목 가능한 산업 및 기술 발굴, GERI 정책연구소 연계

- 첨단소재, IT, 자동차 연계산업 육성 지원
 -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관련 컨설팅 지원 등 추진
 -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CFK-Valley와 교류협력 확대

(3) 투자유치사업

- 투자협력사업 및 각종 회의 유치
 - 독일 내 기업체 및 연구소 대상 구미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
 - 구미 산업 생태계와 관련된 박람회, 국제세미나 유치
-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지원
 -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현지 설명회 정보 제공, 관심투자기업 매칭
 - 기업 소개자료 제작, 현지 통역지원

(4) 기타사업

- 해외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
 - AWO, 디아코니 등 독일 내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한 해외 청년일자리 창출
 - 독일 파견생의 현지 숙소, 연수 및 기타 독일생활 지원
- 국제협력 및 교류 업무 추진
 - 독일 내 경제인, 경제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및 교류협력 증진
 - 볼프스부르크시 및 우호도시와 교류협력 행사 추진
 - 지역 한인회와 연계한 시민 축제에 구미기업 홍보부스 운영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(1) 구미시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구미경제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이 시급하며, ‘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’은 구미 경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
- (2) 이에 독일통상협력사무소는 차세대 성장산업의 원천 기술을 가진 유럽 국가들에 대한 직접 교류의 창구로써, 구미시 산업이 다음 세대로 나아가는 가교 역할 수행
- (3) 또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투자유치 등 원활한 기업지원 업무추진과 해외 일자리 창출, 국제협력 및 교류를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 구현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(2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(3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2019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※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

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장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□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재원의 조달)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.

1.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
 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
 3. 대학, 연구소,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
 4.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- 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·보조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기술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연구개발사업
2. 기술교육훈련사업
3. 인력양성사업
4. 창업보육 및 성장보육지원사업
5. 정보교류사업
6. 기술혁신지원사업
7. 시험생산사업
8. 시설·장비 운용사업
9. 전자·정보통신기기 등 부품소재육성사업
10.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기업 등의 위탁사업과 용역사업
11. 그 밖에 기술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소관 실 · 과		투자통상과
입 안 자	과 장	최 동 문
	담 당	정 명 자
	담 당 자	박 영 실 (480-6033)